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정 2024. 10. 1 조례 제3158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무원의 시정 전반에 관한 창의적 정책연구를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연구모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연구모임"이란 시정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광명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을 말한다.
 - 2. "연구과제"란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주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조사·분석·연구·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과제로 "정책과제"와 "자율과제"를 말한다.
 - 3. "정책과제"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본 및 중장기계획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.
 - 4. "자율과제"란 시정 발전 및 행정 혁신 등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.
 - 5. "민간전문가"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 험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.
 - 6. "주관부서"란 연구모임을 운영 및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)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선정한다.
 - 1. 시기 적정성
 - 2. 자료조사 및 통계분석 등의 활용도
 - 3. 난이도 및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
 -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과제를 선정한다.
 - 1. 필요성과 타당성
 - 2. 연구기간 및 내용. 예산계획의 적정성
 - 3. 창의성 및 기대효과 등

광명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③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④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구성 및 운영) ① 정책과제 연구모임은 과제 관련 업무부서 팀장 및 팀 원 등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자율과제 연구모임은 6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, 필요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③ 연구모임은 모임별로 모임장 1명씩을 두고, 모임장은 각 모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5조(연구활동비 지원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자율과제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을 위한 타 기관·단체 벤치마킹, 교육참가, 연구자문 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6조(민간전문가 자문) ① 연구모임은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정책연구 평가위원회) ① 시장은 연구모임 성과를 심의·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평가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실·국·단·소·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,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정책기획 업무 소관 실·국장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성과 평가에 따른 우수모임 선발
 - 2. 우수모임 포상 여부 및 포상 규모
 - 3. 연구결과 정책 도입 여부
 - 4.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 -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모임 및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⑦ 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은 당해 연도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.
- 제8조(평가 및 활동에 대한 보상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모임 운영 결과를 평가한다.
 -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도입이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고, 통보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또는 국내·외 연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